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61

발의연월일: 2024. 6. 28.

발 의 자:김원이・위성곤・서미화

이정문 • 남인순 • 서영석

김한규 • 박지원 • 김선민

민형배 · 이해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결핵은 결핵균을 원인으로 하는 호흡기 전파 질환으로, 밀접 접촉자의 약 30%가 무증상으로 잠복감염되고, 이 중 약 10%의 감염자가 평생에 걸쳐 발병하는 감염력이 높은 질환임.

현행법은 결핵예방을 위해 의료기관·학교·유치원 등의 장은 그 기관 등의 종사자 등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결핵검진 등의 의무 이행 여부 점검은 과태료 부과의 주체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항으로 국가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결핵검진 이행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결핵검진등을 실시한 이후, 그 실시현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하여, 결핵 예방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34조).

법률 제 호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등에"를 "등과 제3항에 따른보고, 작성·보관 및 통보방법 등에"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실시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고받은 사항을 작성·보관하고, 그 내용을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② 제11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핵검진등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핵검진등을 실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결핵검진등) ① 다음 각	제11조(결핵검진등) ①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	
관·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	
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	
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	
로 갈음할 수 있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실시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
	<u> 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u>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u>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
	고받은 사항을 작성·보관하고,
	그 내용을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결	<u>4</u>
핵검진등의 대상, 주기 및 실시	

방법 <u>등에</u>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과태료) ① (생 략) <u><신 설></u>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이 부과·징수한다.

<u>당</u> 과 세3양에 따든 모고,
<u>작성·보관 및 통보방법 등에</u>
제3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1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
고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